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329 호

2000 년 7 월 22 일 토 요일

선	기 관 의 장
람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4호(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5호(담배소매업폐업공고) -----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6호(공시송달공고) -----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7호(신지적공부작성에따른공고) ----- 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8호(소유사실확인에따른관계, 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9호(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0호(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 1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1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2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2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3호(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4호(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 2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공보실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4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이전(폐차)명령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자진이전(폐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매각)하고 아울러 동법 제8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0년 7 월 20 일 ~ 2000년 7 월 29 일 까지 (1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00년 7 월 29 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2 ☎ 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번지 ☎ 442-6660
 - 기전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 814-44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인천80바1404 외 36대

강 제 처 리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 치 장 소 (인천 남동구)	비 고 (견인보관)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378	인천80바1404	동아고압 탱크로리	(주)광희 특수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9	고잔동 719 (142블럭)	
379	충북1도81823	쏘나타 오토매틱	중우정일 (주)	충북 청원 천도면 우북리 378-1	간석4동 762 장미빌라 5동 옆	
380	인천30고9539	캐피탈오토	황진영	인천 남동 만수 1083-4	간석4동 230-16	
381	인천30거7834	쏘나타 오토매틱	이정일	인천 남구 도화동 76-20 새정빌라 다/102	간석4동 250-7 경인목욕탕 앞	
382	인천1도9725	코란도 II-5	김완현	인천 남구 용현동 557-1 유원용현(아) 5/703	남동공단 159블럭 5롯데 영림실업 담당위	
383	서울7구1585	점보타이탄1.4 본와이드로우	곽길웅	서울 강서구 천호동 311-32	구월3동 산62-1 공터	인천폐차 사업소
384	인천2머8335	프라이드	이재규	인천 서구 석남동 588 유일빌라 나/202	간석3동 225-52 두진(아) 옆 샤론교회 앞	기전폐차 사업소
387	경기2고5488	엑셀	함광호	경기 부천 오정구 내동 349-3	남동공단 24블럭 8롯데	
388	인천1다5569	그래저2.4	(주)중부 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82-2	남동공단 25블럭 12롯데	
389	인천2머2031	티코	정옥량	인천 부평구 십정동 423-11	남동공단 32블럭 7롯데	기전폐차 사업소
390	인천31거3223	르망	강윤식	인천 동구 화수 37-105 씨티빌라 402	남동공단 32블럭 7롯데	기전폐차 사업소
391	인천7노6966	레이서벤	이대영	인천 남동 만수 109-364 경인맨션 101/101	남동공단 57블럭 2롯데	
392	서울6수1850	다마스	심옥기	서울 은평구 녹번 4-369	남동공단 54블럭 4롯데	서울폐차 사업소
393	인천30루9228	콩토도오토	오용일	인천 연수 동춘동 925 한양1차(아) 106/1905	남동공단 47블럭 3롯데	서울폐차 사업소
394	경기3머6644	쏘나타	박세중	경기 광택 서종동 241 주공(아) 13/103	남동공단 64블럭 2롯데	서울폐차 사업소
395	서울5노1554	그레이스	김영열	서울 성동 성수동2가 320-2 이화연립 205	남동공단 30블럭 공원 옆	
396	서울7루3610	포터	이호산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3	남동공단 31블럭 3롯데	
397	인천30머8801	르망오토	민영구	인천 남동 만수 953-16 아트다세대 지하2호	만수1동 953-16 아트빌라 1동 옆	
398	충남1두6694	엘란트라	이 규	충남 보령시 대천동 618 -64 구상가 313호	간석3동 롯데빌라 뒤	

강 제 처 리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 치 장 소 (인천 남동구)	비 고 (견인보관)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399	인천34다4222	쏘나타	김재우	인천 계양 효성동 554-6 효성골든타운 8/B01	간석3동 49-28 청기외목욕탕	
400	경기88가7715	와이드본고 킹캡	박용호	경기 구리 사노동 260-2	간석3동 이상(아)정문 앞	
401	경기42고7316	룩스단	김철영	경기 안산 선부 273-2 항수농장	간석3동 117-1 정기전자 옆	
402	인천7고1207	베스타6밴	박충걸	인천 남동 만수동 5-422 대동상가 지하1호	간석3동 두진(아)담장	
403	인천3라1898	르망	박주민	인천 연수 연수 548-7 B04	간석3동 상인천중 담장	서울페차 사업소
404	서울5드7600	베스타	이화동	서울 마포 성산 228-10 서교빌라 210	간석3동 산15-1 약산주차장안	
405	인천1로6759	엑셀	김정운	인천 남동 간석동 37-29 청왕빌라 302	간석3동 간석초교 담장옆	인천페차 사업소
406	인천2거1539	프린스 1.8MT	박순희	인천 남구 주안동 551-4	간석3동 상인천중 담장	인천페차 사업소
407	서울3추9235	르망	이한길	서울 중랑 목동 233-35	간석3동 약산주차장안	인천페차 사업소
409	인천2가4467	프라이드	이유성	인천 남동 논현동 68-32 한라(아)1704	논현동 549 한라@주차장	
411	경기51가9455	티코	박종웅	경기 시흥 은행 109-92	고잔동 86-12 신원 단지내	
413	인천1고4442	프라이드	한양유신 정기(주)	인천 남동 남촌동 610	남동공단 36블럭 3롯데	기전페차 사업소
414	인천3라9632	콩코드오도	이용호	인천 서구 석남 569-13 낙원연립 C/210	구월3동 1133-7 공터	인천페차 사업소
415	인천4나7791	캐피탈	박승만	인천 동구 화수동 34-51 진주빌라 303	구월4동 1316-8 드림랜드(아) 앞	
417	인천1너6554	프레스토 오토매릭	윤윤철	인천 남동 구월동 23 주공(아) 120/302	구월2동 23 주공(아) 149동 옆도로	
418	광주8너6755	베스타6밴	박인철	광주 서구 쌍촌동 894-2	구월2동 23 주공(아) 157동 뒤	
419	인천3모1316	에스페로	류응만	인천 남동 간석동 139-1	간석2동 139-2	
420	전북1가9118	프라이드	김규홍	전북진안군 진안을 군상리 288	만수5동 880-15 놀이터 담장 옆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5호

담배소매업폐업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2의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업폐업신고 현황 】

구 분	폐업신고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주소	상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 7. 14	04-가-2039	최 무 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 208-8	수력슈퍼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6호

공시송달공고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고지 서류를 2000. 4. 17.의 4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및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송달서류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나. 납부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및사업장주소	상 호	과 징 금
이정순		인천,남구,관교동484-7. 101호	진 다 방	1,000,000
	공	란		

다. 공고기간 : 2000. 7. 20. - 8. 5 . 끝.

2000. 7.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7호

신지적공부작성에따른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벽산아파트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벽산건설(주)의 6개주택조합으로 부터 사업완료 신고되어 종전의 토지를 폐쇄정리하고 확정된 내역에 의거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기간종료 후 제증명(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됨을 공고합니다.

아 래

- 대상토지 : 남동구 만수동 116-32번지의 18필지
- 시 행 자 : 벽산건설(주)의 6개 주택조합
- 사용검사일 : 2000년 5월 31일
- 열람·공고기간 : 2000년 7월 20 일 ~ 7월27일(7일간)
- 지적공부발급개시일 : 2000년 7월28일

2000. 7.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종전토지 및 확정토지 내역

(만수동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순 번	종 전 토 지			확 정 토 지			비 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116-32	대	5,980	1114	대	58,670.5	기부채납
2	116-37	전	354				
3	116-47	임야	16	1114-3	대	41.0	
4	116-48	임야	20	1114-1	도로	293.3	
5	116-58	전	9,383				
6	116-65	전	2,866	1114-2	도로	6.0	
7	116-281	임야	2				
8	116-368	임야	28,597	확정후 1114번지와 1114-3번지는 동시에 합병처리			
9	116-371	전	333				
10	116-372	전	5,514				
11	116-373	임야	1,183				
12	116-374	임야	330				
13	116-375	전	228				
14	116-376	전	277				
15	116-377	임야	41				
16	산3-5	임야	694				
17	산3-13	전	1,331				
18	산3-14	전	415				
19	산3-15	임야	1,868				
계	총19필		59,432	총4필		59,010.8	감412.5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8호

소유사실확인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만수3동 111-14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에 따른 관계공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0. 7.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만수동 111-140번지 일원
2. 편입대상 물건 및 정당 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건설과 보상팀 (☎ 453-2562)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0. 7. 20 ~ 8. 19 (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0. 8. 19 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지 장 물 조 서

만수동 111-140번지 부근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건물면적(M ²)			층 별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종명	지번	전체	편입	잔여				주소	성명	
1	만수	111-119	28.00	4.94	23.06		세멘벽돌,아스팔트생글	주택	만수동 111-119	김용숙	462-5744
계			28.00	4.94	23.06		브릭담장 2.0M				
2		111-119	32.41	3.36	29.05		세멘벽돌,기와	주택	만수동 111-399	김상호	462-1546
		111-141	2.47	1.36	1.11		세멘벽돌,스라브	주택			
			1.10	1.10			철골	축사			
계			35.98	5.82	30.16						
3		111-141	0.90	0.48	0.42		목조,라이트	빈소	남구도화1동 573-1 우남A 리/103	주영일	866-0040
			25.05	2.02	23.03		세멘벽돌,기와	주택		(세입자:윤인모)	
			4.20	1.36	2.84		세멘벽돌,스라브	통로			
			1.26		1.26		목조,라이트	차양			
			3.99		3.99		목조,라이트	주택			
계			35.40	3.86	31.54		철대문 1(B=1.8), 세멘벽돌담장 0.6M				
4		111-140	34.42	1.88	32.54		세멘벽돌,기와	주택	만수동 111-142	고영복	464-0751
계			34.42	1.88	32.54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19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통장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통장자녀장학금을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0년8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453-215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7.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 정 사 유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폭넓게 운영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제2조(장학금의 신청)제1호중 “성적”을 “재학증명서”로 하고 통장장학금 신청시 첨부서류인 “서약서 1통”을 삭제한다.

☐ 본 문

“별첨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참조”

☐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제1호중 “성적”을 “재학증명서”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조 관련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중 첨부서류인 서약서 1통 및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약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을 각각 제2호 내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00.1.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생략)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서약서(별지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생략)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의 <u>재학증명서</u>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u>(삭 제)</u>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3. <u>(삭 제)</u>
제3조(추천)----- <u>(별지3호서식)</u> -----	제3조(추천)----- <u>(별지2호서식)</u> -----
제4조(선발) ①(생 략) ②----- <u>(별지4호서식)</u> ----- ③(생 략)	제4조(선발) ①(생 략) ②----- <u>(별지3호서식)</u> ----- ③(생 략)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통장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산정제도가 폐지되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교육부 지침과 맞지 않아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성적제한규정에 저촉되어 매년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므로 성적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0년8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453-215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인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 7.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 정 사 유

통장의 사기양양 시책의 일환으로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정수의 15%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지난 '96. 9월 마련한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산정제도를 폐지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조례가 교육부 지침과 맞지 않아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성적제한규정에 저촉되어 매년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자는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므로

성적제한규정을 개정하여 통장자녀장학금을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안제2조).
- 장학생의 자격이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및 기능, 예능, 체육에 뛰어난 자”를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지역 발전, 반사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를 유공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기능, 예능, 체육에 뛰어나 시 단위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한 있는 자를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한다.(안제3조)
- 장학생은 통장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안제3조)
-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통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안제4조)
-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개시후 1개월 이내 지급하며, 선발된 장학생은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지급한다(안제8조)
- 장학생은 각 통장별로 매년 연속해서 선발할 수 없다.(안제5조)

□ 본 문 : “ 별첨참조 ”

□ 친구조문 대비표 : “ 별첨참조 ”

□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칙중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게”로 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조(장학금의 자격)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본칙중 “3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사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 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시 단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에서 참가한 실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추천) 본칙의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상·하반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를 “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로 한다

제4조(선발)제1항중 “학교장의 의견(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로 하고, 제2호 “장기근속통장”을 제3호로 하고, 제2호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납부증명으로 확인)”을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금액이 각각 30,000원 미만인 자)”으로 하며 제4호는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학생은 각 통장별로 매년 연속하여 선발할 수 없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1항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를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제1항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학기를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를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
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지급정지) 제1항 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때”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2001.1.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u>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u>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u>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에게</u>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신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u>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u> 해당하는 자 2. <u>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u>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사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시 단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 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자	
		(신설)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상·하반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추천)	동장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u>학교장의 의견(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u> 1. 모범 통장 표창수상자(구청장, 시장, 장관등) 2. 장기근속통장 3.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납부증명원으로 확인) 4. 성적이 우수한 통장 자녀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u>학교장의 의견(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u> 1. (현행과 같음) 2.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각각 30,000원 미만인 자) 3. 장기근속통장 4.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장학생은 각 통장별로 매년 연속하여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생략)	제6조(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생략)	제7조(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학기를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생략	제9조(현행 제8조와 같음)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1. (삭 제)
2. (생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9조(생략)	제10조(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생략)	제11조(현행 제10조와 같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1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구 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 주소	성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7.19	83	박 미 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9-9 (남동공단32블럭10롯데)	삼주휴게실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2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구 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 주소	상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7.20	84	김 영 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 186-10	송희슈퍼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3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등록일 : 2000. 7. 21.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실내건축공사업	인천남동 00-01-07	(주)미래기술 개발	이기연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3-4	120111-0222894	429-4384
실내건축공사업	인천남동 00-01-08	진평건설(주)	김미숙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68-1, 201호	120111-0226557	427-9708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인천남동 00-27-3-7	화승열기	이중배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96-35		472-4745

2000. 7.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4호

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기업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서해안고속도로<남동IC접속부입체화>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토지수용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가 있으신 분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7.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서해안고속도로 남동IC 접속부 입체화공사]
2. 기업자(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491-4(시점), 남촌동 596-2(종점)
4. 사업내역 : 교량 - 2개소/65m, 암거 - 4개소/149m, 용벽 - 2개소/56m
5. 열람기간 : 2000. 7.22. ~2000. 8. 5.(15일간)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전화(032)453-2563]
7. 의견서 제출처 : 남동구청, 한국도로공사(중부지역본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8. 수용대상 내역 : “별첨[손실보상대상 토지내역]”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건설과 보상팀[전화(032)453-25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대상 토지내역서

(단위 : 평, 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지목)	면적(㎡)			평가기준별 평가액			가액지 제시액		소유지		관계인		비고
	시	군	동			정	면	적	정	당	평	단가	금액	주소(원주소)	성명	주소(원주소)	성명	
1	인천시		남동동	510-178 (510-85)	전	997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29,610,000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371	최정임	인천시 중구 시동 24-10	중앙산업 주식회사	인천지법 경매개시 근저당
																인천시 중구 시동 24-10	중앙산업 주식회사	근저당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371	정순재	기차본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447-1	남동세무서	압류
																인천시 남동구 민수동 1008	인천시 남동구청	압류
2	인천시		남동동	510-121 (510-121)	답	717			77,000	76,000	76,500	76,500	54,850,500	시흥시 장진구 구의동 210-22	최재영			
3	인천시		남동동	512-60 (512-19)	답	750			98,000	94,000	96,000	96,000	72,000,000	시흥시 흥신구 이촌동 301-160 원(1APT 22-206)	최금임			
4	인천시		남동동	512-63 (512-22)	전	449			134,000	132,000	133,000	133,000	59,717,000	인천시 남구 도화동 415	지동식			
5	인천시		남동동	520-9 (520-7)	답	251			96,000	92,000	94,000	94,000	23,594,000	인천시 옹진군 백암면 북포리 537	정경수	시흥시 대이동 496-11	소관농업협 회	근저당
6	인천시		남동동	550-6 (550-1)	답	65			96,000	91,000	93,500	93,500	6,077,50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60-5 동(1APT 3-801)	김종희			

손실보상대상 토지내역서

(단위 : m², 원)

연번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단종)	면적 (㎡)	원가			기타지 피상면		소유지		관계인		비고
	시	구	동·리				정당	평균	단가	금액	종류	종수(원주소)	면적	종수(원주소)	면적	
7	인천시		남동동	494-18 (494-7)	방	173	106,000	106,000	106,000	106,000		인천시 남구 용현동 490-19	이관회			지역 복지
					방	16	321,000	318,000	319,500	319,500						일반 주거
					방 (도)	30	148,000	147,000	147,500	147,500						일반 주거
합계						219				27,875,000						
8	인천시		남동동	494-11 (494-11)	전	82	111,000	111,000	111,000	111,000		인천시 남구 용현동 490-19	이관회			지역 복지
					전	1	334,000	330,000	332,000	332,000						일반 주거
					전 (도)	62	111,000	111,000	111,000	111,000						지역 복지
					전 (도)	20	154,000	153,000	153,500	153,500						일반 주거
합계						165				19,366,000						
						3,613				393,110,000						